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97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이용선 · 서영석 · 송재봉
강준현 · 안도걸 · 김남희
박홍배 · 권향엽 · 최혁진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고,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⑨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고,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